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12. 2. 27. 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2년 2월 7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2년 2월 16일 회부

라. 상정일자 : 제1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(2012. 2. 23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오승환)

가. 제안이유

○ 급식심의위원회 및 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마련하는 등 현행 급식지원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원활한 급식지원 체계를 갖춤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제명변경 :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』를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』로 변경
-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용어정의(안 제2조)
- 급식경비 지원대상 기관의 지원신청서 제출 규정 신설(안 제5조의2)
- 급식심의위원회 위원 임기 조정 및 정족수 규정 신설(안 제6조)
 - 위촉직위원의 임기를 2년 단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하여
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도모

- 급식심의위원회 심의기능 신설(안 제6조의 2)
 - 급식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여 위원회의 체계를 갖춤
- 급식지원센터의 기능 신설(안 제7조제2항)
 - 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을 마련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정책개발 및 교육지원, 식재료 공급·유통·사용의 지원체계를 갖춤
- 기타 용어 정비 및 문구 수정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이 헌 영)

○ 이 개정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가 함께 시작한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서울시가 동참하고 2012. 1. 5일 서울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그간의 논란이 해소됨에 따라, 우리구 학교급식 지원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원활한 급식지원체계를 갖추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제명을 "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"에서"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"로 변경 함.
- 안 제5조의2에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 및 시설장은 급식경비
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규정 신설함.
- 안 제6조에 급식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를 "2년 단임"에서 "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"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위원회 정족수를 "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/3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,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" 한다는 규정 신설함.
- 안 제6조의2에 급식심의위원회 심의기능을 신설하여
 - · 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
 - · 급식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
 - ·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- · 급식의 영양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등을 심의하도록 함.
- 안 제7조제2호에 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신설하여
 - · 매년 정기적인 급식 실태 조사
 - ·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과 범위 선정
 - ·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 및 생산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선정
 - · 식재료 유통 및 공급관리
 - · 관할 교육청(교육지원청)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함.
- 안 제8조제3항에 지원대상 학교 등은 구청장의 급식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.
- 검토결과 이 개정 조례안은 2012년 학교급식의 지원주체인 서울시교육청, 서울시, 자치구의 원만한 협의에 따라 친환경 무상급식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게 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으로
- 먼저 급식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신설됨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등 학교급식에 관하여 보다 체계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지며
- 또한 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이 새로이 규정됨에 따라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 하고 보다 안전한 식재료가 유통되고 공급·관리되는 등 학교급식 지원체계가 보강 될 것으로 판단됨.
-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학교급식의 질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현행 학교급식 체계가 보강되면 원활한 급식지원 체계를 갖춤으로써 양질의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.

○ 그 밖에 부문은 법제처의 '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'에 따른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조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한 것으로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제 106 호 제출연월일: 2012. 2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급식심의위원회 및 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마련하는 등 현행 급식지원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원활한 급식지원 체계를 갖춤으로써 성장기 학 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제명변경 :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』를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』로 변경
- 나.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용어정의 (안 제2조)
- 다. 급식경비 지원대상 기관의 지원신청서 제출 규정 신설 (안 제5조의2)
- 라. 급식심의위원회 위원 임기 조정 및 정족수 규정 신설(안 제6조)
 - 위촉직위원의 임기를 <u>2년 단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</u>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도모
- 마. 급식심의위원회 심의기능 신설(안 제6조의2)
 - 급식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여 위원회의 체계를 갖춤
- 바. 급식지원센터의 기능 신설(안 제7조제2항)
 - 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을 마련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정책개발 및 교육 지원, 식재료 공급·유통·사용의 지원체계를 갖춤
- 사. 기타 용어 정비 및 문구 수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학교급식법

나. 예산조치 : 2012년 예산편성(2,481,645천원)

다. 합 의: 합의사항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 (2012. 1. 12 ~ 2. 1)결과 : 의견없음
- 2) 규제심사 : 해당없음.

붙임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"를 "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"로 한다.

제1조 중 <u>"건강한 심신의 발달과 학교 등 급식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</u> 것"을 "건전한 심신 발달에 기여함"으로 한다.

제2조 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"급식지원센터"란 급식에 대한 정책개발 및 교육을 지원하고 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공급·유통·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말한다.

제3조제1항 중 <u>"범위 내"를 "범위"</u>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<u>"수있다"를 "수 있다."</u>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<u>"친환경우</u> 수"를 "친환경 우수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은 삭제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지원신청)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이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할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,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
- 2. 급식시설 · 설비의 위치와 규모
- 3. 지원대상 기관의 학생 등의 규모 및 급식 대상자 수
- 4. 지원받고자 하는 급식경비 및 산출내역
- 5. 지원대상 기관의 급식 시행 계획

6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제6조제5항 본문 중 "2년 단임으로 하고"를 "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,"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⑦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/3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,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
- 2. 급식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
- 3.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4. 급식의 영양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
- 5. 그 밖에 급식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

제7조의 제목 "(급식지원센터 설치)"를 "(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항 중 "있으며, 관리·운영을 비영리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"를 "있다.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매년 정기적인 급식 실태 조사
- 2.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과 범위 선정
- 3.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 및 생산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른 생산 조정 및 품목선정
- 4. 식재료의 유통 및 공급관리
- 5. 관할 교육청(교육지원청 포함)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
- 6. 그 밖에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
- ③ 구청장은 필요시 급식지원센터의 관리·운영을 비영리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8조제1항 중 "따라 친환경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 구입에 우선"을 "맞게 지원금을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지원대상 학교 등은 구청장의 급식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급 |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|
| 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|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|
|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학교급식법」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한 각급 학교 등에 대한 친환경 우수식재료 사용을 장려하고, 급식지원을 통해 성장기 학생 및 영·유아의 건강한 선신의 발달과 학교 등 급식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. | 제1조(목적) |
|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| 제2조(정의) |
| 1. ~ 4. (생 략) | 1. ~ 4. (현행과 같음) |
| <u><신 설></u> | 5. "급식지원센터"란 급식에 대한 정책 개발 및 교육을 지원하고 급식에 안전 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공급·유통·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말 한다. |
| 제3조(자치단체의 임무) ① 영등포구청 | 제3조(자치단체의 임무) |
| 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제1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급식에 필요 한 경비를 예산의 <u>범위 내</u> 에서 지원한 다. | |
| ② (생 략) | ② (현행과 같음) |
| 제5조(지원방법) ① 구청장은 급식을 | 제5조(지원방법) ① |
| 위하여 예산 또는 현물로 지원할 <u>수있</u> | <u>수 있다</u> . |

다.

-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제4호의 친환경우수 식재료를 급식에 우선 사용하도록 지도 · 감독하여야 한다.
- ③ 급식지원 신청 및 지원체계 등에 대 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제6조(급식심의위원회 설치) ① \sim ④ | 제6조(급식심의위원회 설치) ① \sim ④ (생략)

-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당연직 위원과 구 의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.
- ⑥ (생략)
- ⑦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.

| ② | | | | |
|------------|----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|
| | | | <u> 친환경</u> | 우수 |
| | | | | |
| | | | | |
| 〈 삭 | 제> | | | |

제5조의2(지원신청)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이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할

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 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, 대표자의 성 명 및 주소
- 2. 급식시설 · 설비의 위치와 규모
- 3. 지원대상 기관의 학생 등의 규모 및 급식 대상자 수
- 4. 지원받고자 하는 급식경비 및 산출내 역
- 5. 지원대상 기관의 급식 시행 계획 6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- (현행과 같음)
 - ⑤ -----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,-----
 - ⑥ (현행과 같음)
 - ⑦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/3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,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<신 설>

제7조(급식지원센터 설치) 구청장은 우 제7조(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) ① 수한 식재료 공급 등 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센터를 설치 · 운영할 수 있으며, 관리 · 운영을 비영리법인 ·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제6조의2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
- 2. 급식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
- 3.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4. 급식의 영양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
- 5. 그 밖에 급식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

----- 있다.

- ② 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매년 정기적인 급식 실태 조사
- 2.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과 범위 선정
- 3.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 및 생산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른 생산 조정 및 품목선정
- 4. 식재료의 유통 및 공급관리
- 5. 관할 교육청(교육지원청 포함)과 연 계한 교육 및 홍보
- 6. 그 밖에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
- ③ 구청장은 필요시 급식지원센터의 관 리 · 운영을 비영리법인 · 단체 등에 위 탁할 수 있다.

제8조(지원대상자의 의무) ① 지원금을 지급받은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지원금 지급결정 내용에 <u>따라 친환경농산물 및</u> <u>안전한 식재료 구입에 우선</u> 사용하여야 한다.

② (생 략)

<u><신 설></u>

| 제8조(지원대상자의 의무) ① |
|-----------------------|
| |
| <u>맞게 지원금을</u> |
| |
| |
| ② (현행과 같음) |
| ③ 지원대상 학교 등은 구청장의 급식관 |
| 런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|
| 응하여야 한다. |